의안 번호

1800

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8. 2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8. 20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9. 3.(금)

2. 제안이유

O 행정안전부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, 조례상 미비젂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(안 제2조)
 - 고등학생 ⇒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, 대학생
- 나. 장학금 신청횟수 및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제한 규정(안 제3조)
 - 통장 1명당 1자녀, 1회(2개 학기)로 신청 한정
- 다.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마련(안 제7조)
 -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 ⇒ 학기별 50만원(연 100만원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- 나.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2020-247호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, 행정안전부의「지방자 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중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 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
- O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, 정액지급 규정 및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등 개선 및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
- 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301-02 [장학금 및 학자금]

- 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
 - 통·리장 자녀,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)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2020-247호)

- 통·리장 사기 진작이라는 운영 취지 부합,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·고교 학생과 동시에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
- 2021년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,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